

Danziger, Danziger & Muro, LLP

덴지거, 덴지거 & 무로 법률사무소

로펌소개

덴지거 로펌은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89년 뉴욕에서 설립되어 현재까지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덴지거 로펌의 주요 전문 영역은 일반 기업법과 미술법, 부동산법, 지적재산권법 그리고 고용법입니다.

덴지거 로펌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의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아시아 기업, 국제적인 미술관련 회원들과 유명 아티스트들에게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덴지거 로펌 파트너

Charles T. Danziger

Thomas C. Danziger

Bradley J. Muro

소속 변호사들

Karen Hirshfield

Danielle Gaier

Yuh-kyoung (Kate) Rhie

덴지거 로펌 주요고객

Van Cleef & Arpels / 반클리프 & 아펠스, Cartier / 까르띠에, Piaget / 피아제, Montblanc / 몽블랑, Jaeger-LeCoultre / 예거 르 코쳐, Vacheron Constantin / 베처론 콘스탄틴, Shanghai Tang / 상하이 탕, Dunhill / 던힐, Chopard / 초파드, Sooja Kim / 아티스트 김수자, Maya Lin / 아티스트 마야 린, Mariko Mori / 아티스트 마리코 모리, Fuji Television Network / 후지 방송사, Taisei Corporation / 다이세이 건설사, Issey Miyake / 패션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 Ito En / 이토 엔, Restaurant Daniel / 레스토랑 다니엘과 가맹점들, BLT Restaurant Group / BLT 레스토랑 그룹과 가맹점들, Roasting Plant / 로스팅 플랜트, Midori Goto / 바이올리니스트 미도리 고토, Hidetoshi

Nakata / 축구선수 히데토시 나카타 , Nagoya/Boston Museum of Fine Arts / 나고야 보스턴 미술관, 이사무 노구치, 히로시 수기모토, 마리코 모리 그리고 그 외 개인 컬렉터, 갤러리, 개인 미술품 딜러 및 비영리 기관 등.

변호사 소개

Charles T. Danziger 찰스 T. 댄지거

찰스 T. 댄지거는 Yale University에서 미술사를 전공 후 New York University 로스쿨을 졸업하였다. 재학 중에는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에서 에디터로 활동하였고 졸업 후에는 뉴욕의 로펌 Milbank, Tweed, Hadley & McCloy의 기업 बैं킹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그 후 일본 최고의 로펌 중 하나인 Nagashima & Ohno in Tokyo와 뉴욕 현대 미술 박물관(The Museum of Modern Art)에서 법무자원의원을 역임하였다.

찰스 T. 댄지거는 미야케 디자인 재단과 Partners in Performance(바이올리니스트 미도리가 창설)의 임원이다.

또한 그는 일본어, 독어, 불어에 능하며 국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시카고 대학과 일본 동경 대학, 게이오 대학 등에서 법률 강의로 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저서로는 “Japan for Starters”(책 속으로 떠나는 일본여행" 이란 제목으로 한국어 번역 출판)"와 만화로 된 “Harvey and Etsuko’s Manga Guide to Japan” (역주: 하베이와 에츠코의 일본 가이드)이 있으며 지난 8년 동안 찰스와 형 토마스는 미국 미술계에서 가장 저명한 “아트+옥션 (Art + Auction)” 매거진에서 법률관련 칼럼 “Brothers-in-Law”(역주: 법률가 형제들).”를 맡아 연재 하고 있다. 2010년 아트+옥션 매거진은 찰스와 토마스를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전문 변호사로 선정하였다. 같은 해 찰스와 토마스는 블룸버그(Bloomberg)사가 출판한 Fine Art and High Finance(순수미술과 대형 금융 거래)에서 “The Illegal Art Trade (불법 미술 거래)” 편을 저술하였다.

Email: charles@danziger.com

Thomas C. Danziger 토마스 C. 댄지거

토마스 C. 댄지거는 Wesleyan College와 New York University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재학 중에는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에서 에디터로 활동하였고 졸업 후 댄지거 로펌을 설립하기전까지 Shearman & Sterling in New York에서 부동산 전문법 담당 변호사로 근무하였다. 그는 불어에 능통하며 American Bar Association의 회원이다.

Email: thomas@danziger.com

Bradley J. Muro 브레들리 J. 무로

브레들리 J. 무로는 1990년에 Duke University에서 학사학위를 마치고 1994년에 New York University 로스쿨을 졸업하였다. 무로는 M&A, 기업재정, 부동산, 지적 자산 그리고 국제상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M&A업무에 있어서는 국내외의 기업 통합과 매매를 담당하며 국제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의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율 능력이 탁월하다. 기업재정 분야에서 무로는 벤처자금, 비공개 투자, 그리고 합작 투자 거래 등을 주 분야로 활동했다. 또한 명품 브랜드를 가진 회사에 맞춘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계약, 매매 전반에도 활동하고 있다. 덴지거 로펌에 합류하기 전 General Counsel of Launch Center 39이란 인터넷 벤처자금 회사에서 부회장을 역임했었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는 Gibson, Dunn & Crutcher 로펌 소속으로 M&A와 벤처자금 전문 변호사로, 1994년부터 1997년까지는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로펌에서 경영진 보상과 복리후생을 전문으로 근무하였다.

Email: brad@danziger.com

Karen Hirshfield 카렌 허쉬필드

카렌 허쉬필드는 1994년 Michigan University을 졸업 후 New York University 로스쿨을 졸업하였다. 재학 중 Annual Survey of American Law (연간 미국법 조사)에서 에디터로 활동하였다. 카렌은 M&A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벤처자금과 비공개 투자거래의 발행인이기도 하다. 그녀는 또한 개인소유 기업들에게 상업 문제, 법률 문제를 포함하여 독립체의 형성, 상업계약 관련 등을 전문으로 상담하고 있다. 덴지거 로펌에 합류하기 전 로웬스테인 샌들러, PC 금융 증권 그룹 (Lowenstein Sandler, PC in the Corporate finance and securities group)의 변호인이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프랑크푸르트, 커넛, 클레인 & 셀즈 그룹(Frankfurt, Kurnit, Klein & Selz, PC in the New Media Group)에서 비공개 기업 투자펀드 거래를 전문으로 일했으며, 1997년부터 2000년까지 the Corporate Group at Gibson, Dunn & Crutcher LLP에서 근무하였다.

Email: Karen@danziger.com

Danielle Gaier 다니엘 가이어

다니엘 가이어는 Columbia University 에서 미술사를 전공하고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로스쿨 재학 중 법률잡지인 Michigan Tele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Law Review 의 편집에 참여하였으며, Entertainment, Media and Arts Law Students' Association 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졸업 후에는 Paul, Weiss, Rifkind, Wharton & Garrison 법률회사의 기업부서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후 미국 메이저리그 협회에서 라이선스, 스폰서쉽, 브랜드 및 트레이드 마크 보호 및 전자광고 등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덴지거 법률회사에서는 미술품 거래 및 관련 금융문제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여러 회사 및 개인 고객들의 트레이드 마크 및 지적재산권 문제 그리고 미술품 등 제작에 관한 제반 법률문제에 관한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가이어는 The Frick Collection 에서 인턴 후 뉴욕의 갤러리에서 디렉터로 활동한 바도 있다.

E-mail: danielle.gaier@danziger.com

한국관련 담당:

Yuh-kyoung (Kate) Rhie 이유경

이유경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과에서 문화재보호법과 형법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를 졸업 후에는 뉴욕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덴지거 법률회사에서는 미국 및 각국의 지적재산권 및 계약법 등 미술품 거래와 관련된 제반 법률문제를 다루어 왔으며, 최근에는 한국과 관련된 법률문제들에 집중하고 있다.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미국과 한국에서 예술법 및 관련 분야의 학회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E-mail: yuhkrhie@gamil.com

덴지거 로펌의 주요 업무

- 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해외현지 법인 및 지사 설립, 점포 개업, 운영 전반에 필요한 법적 자문.
- 미술관 제휴 또는 설립, 미술품의 거래 및 전시에 필요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 합병, 기업 운영관리 전반.
- 금융 채무 등의 재 편성
- 매니지먼트 계약, 라이선스계약
- 부동산의 매매 또는 여러가지 비용처리
- 그 외 다양한 법률문제

예술법

덴지거 로펌은 현재 다수의 국내외 박물관과 교육기관의 법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사무 노구치 제단 설립과 보스턴 미술관과 일본 나고야시가 자매결연하여 설립한 나고야보스턴 미술관 프로젝트의 법률자문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패션업계에서는 Ralph Rucci와 Issey Miyake 등 유명 디자이너와 계약을 맺고 저작권과 상표권, 지적재산권 분야의 법률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Phillips de Pury & Luxembourg 등 주요 옥션하우스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전반에 관해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기업법

덴지거 로펌은 M&A, 합병, 매수, 기업 구조 조정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중품 소매기업(보석·시계 브랜드, 패션 부티크, 멀티브랜드 주식회사), 레스토랑 경영자, 의료기기회사 등 폭넓은 고객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덴지거 로펌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변호사는 물론 관련 직종의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법률자문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부동산법

부동산의 프랜차이즈, 매수, 세입, 임대와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미국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저작권, 상표, 지적재산권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법

회사의 요구에 따른 채용협정, 퇴직제도 플랜, 급여 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덴지거 로펌은 다수의 상업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재 반환 힘써요”

미국 형제 변호사 ‘남다른 한국사랑’ 화제

토마스·찰스 댄지거 형제

미술법전문 · 한국어 유창

법학과 예술사를 복수전공한 미술법 전문 미국인 변호사 형제의 한국 문화재 사랑이 화제다.

뉴욕 최고의 미술법 변호사로 명성을 얻고 있는 토마스 & 찰스 댄지거 형제의 한국사랑은 알만한 사람은 익히 아는 사실. 댄지거 형제는 단순한 관심 수준을 넘어 한국 문화재의 본국 송환을 위한 법정 송사에 열정을 쏟고 있다.

23일 사무실에서 만난 댄지거 형제는 손을 내밀며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라는 유창한 한국말로 인사부터 건넸다. 수많은 한국 예술가들과 친분을 나누며 자신도 모르게 한국사랑에 빠졌다는 형제는 “요즘은 한국어 배우기 삼매경에 흠뻑 취해 있다”며 그간 갈고닦은 한국어 실력을 뽐냈다.

“한국의 현대미술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문화와 역사에 더욱 매료됐다”는 두 형제는 “그 후 한국 문화재 송환에 관계된 여러 법률 송사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유창한 일본어 실력으로 이미 수많은 일본인 고객을 관리하던 형제는 자연스럽게 한국도 자주 방문하게 됐고 서울 홍익대학교에서는 미술법을 강의



한국 문화재 반환 소송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형 토마스(왼쪽)와 찰스 댄지거 형제 변호사.

한 이후로 형제의 명성이 한국에도 전해지면서 한국의 고유 문화재를 되찾아 달라는 의뢰도 늘기 시작했다고.

“한국 문화재는 일본, 중국, 미국, 독일 등지에 많이 흩어져 있다”며 말문을 연 댄지거 형제는 “국가적 차원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한국 문화재를 찾으려 노력하는 개인들의 법률자문에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일본에 한국 문화재가 많이 남아 있는데 미국인 변호사의 신분에서 중재하기가 한층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댄지거 형제 변호사는 “문화재를 돌려받는 소송에는 확실한 유통기한이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라는 법적 증거를 최대한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제 한국문화의 중요성과 힘을 깨달고 있다”고 지적한 형제는 “미 주류 문화계에서 인정받는 한국 예술가들과 K-POP으로 대표되는 한류의 등장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런 문화를 보존하는 법률적인 보호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천지훈 기자>

뉴욕 최고 미술법 변호사 T. 댄지거

고가 미술품 거래에 필요한 건 돈, 그리고 법!

비싸고 진귀한 미술품이 세계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많이 거래되는 미국뉴욕. 그곳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와 속임수, 법적 분쟁을 살펴다 보면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정리된다. 고가의 미술품을 거래할 때는 돈만큼이나 법이 중요하단 사실도!

미술품사기는 마약, 불법무기거래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범죄다. 최근 가장 관심을 끄는 소송은 가고시안 갤러리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컬렉터가 엮어 있는 사건이다. 영국의 유명 컬렉터 로버트 월드 Robert Wylde 는 2009 년 가고시안 갤러리가 소개한 소장자를 통해 마크 탠시 Mark Tansey 의 '이노센트 아이 테스트 The Innocent Eye Test'를 구매했다. 마크 탠시는 미국의 생존 작가 중 작품가가 가장 높은 이 중 한 명으로 단색을 이용해 사실적이면서도 몽환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문제는 이 작품 소유권이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게도 있었던 것. <뉴욕 타임스> 등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본래 이 작품은 아트 딜러인 찰스 콜스의 소유로 어머니에게 작품을 팔았고 이후 어머니가 메트로폴리탄에 소유권 일부를 기부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몰랐던 찰스 콜스는 작품을 팔았고 뒤늦게 소유권을 확인한 갤러리와 박물관 측이 반환을 요구했으나 로버트 월드가 적법한 거래라는 점을 이유로 거절한 것이 요지다. 수백만 달러가 걸린 소송으로 미술계는 누가 얼마만큼 책임을 지게 될지 주시하고 있다.

국내 한 대학에서 미술법을 강의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댄지거의 노트북에는 최근 법정 소송 사례가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중에는 아시아권 컬렉터를 대상으로 한 범죄 사례도 있었다. 그는 탐정처럼 눈을 반짝이며 "사건 파일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자. 그게 재미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미술 전문 월간지<아트+옥션 Art+Auction>이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 변호사로 꼽을 만큼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자랑한다.

아시아권 컬렉터를 타깃으로 한 범죄라니, 어떤 내용인가?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 갤러리스트가 고갱의 '꽃병 Vase De Fleurs'를 구입했다. 적법하게 구매한 진품이었다. 보증서를 손에 쥔 그는 위작과 함께 보증서를 가짜로 만들어 아시아의 한 컬렉터에게 판매했다. 작품 자체보다 보증서를 더 중시하는 아시아인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진품 역시 비싼 가격에 되팔아 두 배의 이익을 챙겼다. 이 범죄는 진품과 위작의 소유자가 시장에 우연히 작품을 동시에 내놓는 바람에 들쭉났다.

보증서까지 가짜로 만들다니, 안심하고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뉴욕에서는 고가 미술품의 거래 시 예술 전문 변호사가 반드시 동석한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문서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미국의 유명 아트 딜러인 레오 카스텔리 Leo Castelli 의 아들이 제스퍼 존스의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를 판매했는데 이때도 미술법 전문 변호사가 함께했다.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를 두는 수밖에 없다.

보증서의 진위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대가의 경우 업적을 기리고 작품을 관리하는 재단이 따로 있다. 해당 작가의 작품을 취급하는 전문 갤러리도 있다. 이런 곳에 소장 기록을 물어보면 도움이 된다. 작가가 생존해 있을 경우 직접 메일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다.

미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술 범죄는 무엇인가?

도난이다. 작품을 훔쳤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피할수 있기 때문이다. 위상에 흠이 나는 것을 우려해 도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갤러리나 박물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구겐하임 뮤지엄에 있던 샤갈의 1912 년작 'Le Marchand de Bestiaux'가 도난당한 적이 있다. 뮤지엄 측에서는 도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작품이 영영 '지하 세계'로 묻혀버릴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한 여성이 그 작품을 옥션에 내놓았다. 뮤지엄 측에서는 도난 사실을 밝히고 반환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미술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구매자와 뮤지엄 측이 함의를 보는 것으로 끝났는데 세부 내용은 비밀에 부쳤다.

최근 국제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예술품 소송은 무엇인가?

나치 시대에 강제로 몰수당한 미술품 환수 문제다. 뉴욕에 정착한 이민자 중에서도 이에 대해 문의하는 이가 있다. 클림트의 '아델블로흐 바우어 부인의 초상 Adele Bloch-Bauer'을 둘러싼 소송이 전환점이 됐다. 이 작품의 원 소유자는 바우어 부인의 남편이자 유대인인 블로흐 바우어. 나치 독일 치하에 있던 오스트리아에서 서둘러 도망치는 과정에서 모든 소유품이 나치를 거쳐 오스트리아 정부에 귀속됐다. 블로흐 바우어의 조카인 마리아가 오스트리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공방 끝에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처음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오스트리아 정부는 승리를 확신해 할 데면 해봐라 하는 식이었다. 전례도 없었고 이미 예전에 벌어진 일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블로흐 바우어가 조카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고자 한 정황과 작품을 소유한 증거가 충분했다. 상속 내용에 관한 유서도 발견됐다. 이렇듯 정황과 증거만 충분하면 빼앗긴 작품을 되찾을 수 있다.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많을 것 같다.

분쟁 사례가 많지만 법적 처벌 기준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누가 봐도 '가짜'임이 확실한 작품이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속일 생각으로 작품을 만들고 그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

구매한 작품에 의심이 들 경우 가장 먼저 감정사를 찾게 된다. 뉴욕에는 감정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153 명이다. 모두 최고 권위와 위상을 자랑하는 미국감정사연합회 The Appraisers Association of America 에 가입돼 전문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나눈다. 감정사별로 고흐, 고갱, 클림트, 모딜리아니, 피카소 등 전문 분야가 따로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진품이라는 소견을 낸 작품이 위작으로 판명날 경우 업무상 과실 유무를 따져 처벌을 하지만 의도한 것이 아니고, 위작 여부를 정확히 알아내기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 감정사는 시간당으로 계산해 서비스료를 받는데 비용은 작품과 감정사의 권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미국에는 도난품 기록을 보여주는 웹사이트가 따로 있다고 들었다.

www.artloss.com 에 가면 도난품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작품이 100% 신고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중삼중으로 확인해야 한다.

예술 작품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책정하는가?

로펌마다 시간당 서비스료가 책정돼 있다. 우리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주의할 점은 저렴한 수임료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 챙겨야 할 내용이 많으며 시간을 끌 경우 비용이 오르는 구조라 경험이 많고 믿을 수 있는 로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미술법과 관련한 분쟁만으로 로펌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관련 범죄가 많은가?

미술법과 관련한 분쟁만을 다루진 않는다. 해외에서 전시회를 하는 작가들을 대신해 저작권, 훼손, 분실 등 수많은 법적 세부사항을 체크하고 문제 될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주요 업무 중 하나다.

미술품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비싼 돈 주고 작품을 구매하면서 머리 아플 필요가 뭐 있나. 미술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겠나'하는 생각까지 든다.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

하하. 그런가? 최고 작품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쉽고 무난하게 손에 쥐는 것도 재미없지 않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확실한' 갤러리와 옥션을 통하는 거다. 이런 곳들 역시 종종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지만 잘못이 있을 경우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중요하다.

미주한국일보 2012.02.24. <글 정성갑 기자>



Repatriation's New Frontier

Interest in the retrieval
of ill-gotten treasures
is growing in Korea
*By Thomas and Charles
Danziger*

AS OUR READERS KNOW, discussions of legal cases in the United States involving the return of looted European art are almost as common as bad puns in our columns. But while savvy collectors pass on purchasing pieces of the Parthenon, they may not realize the considerable risks involved in acquiring Asian works stolen from countries such as Korea.

Korea has a long history of invasion by foreign powers, most recently, the Japanese, who occupied the country for a 35-year period ending in 1945. As a result, according to surprisingly precise calculations by South Korea's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s of February 2011, there were 140,560 Korean cultural treasures scattered abroad: 37,972 are in the United States, and more than 65,000 are in Japan.

These are of particular interest to Kwon, a clever Korean client who Skyped us after attending an international repatriation conference in Seoul last summer and wanted our help in securing the return of some of his family's important ceramics that were now in New York and Osaka, Japan.

We started out by giving Kwon some good news: In America, the general rule is that a thief cannot pass good title to stolen art. One famous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was the 1989 federal case *Church of Cyprus v. Goldberg*, in which the court held that a purchaser of stolen 6th-century mosaics, the American collector Peg Goldberg, had not obtained legal title to them, and mandated their return to their rightful owner, the Church of Cyprus. The U.S. rule is in contrast to laws in Japan and most other civil law countries, where an innocent purchaser can obtain good title to stolen property.

But Kwon's claims could still be stymied in the United States if they were brought after the applicable statute of limitations had expired. For example, New York has a three-year statute of limitations on claims such as Kwon's, and the clock starts from the time that the original owner demands the return of a work. In most other states, however, the clock runs from the date that the victim discovers, or should have discovered, the location of the stolen piece.

Another potential roadblock is that a U.S. court might question whether Kwon had diligently pursued recovery of his stolen property. For instance, in the 2010 case *Museum of Fine Arts, Boston v. Seger-Thomschitz*, in which the MFA confirmed its rightful ownership of the 1913 painting *Two Nudes (Lovers)* by Oskar Kokoschka, the federal court dismissed a claim against the museum on the grounds that the delay by the original owner's heir in bringing the suit prejudiced the MFA, since witnesses with actual knowledge of the transfer were by then deceased.

Since Kwon wasn't certain that the ceramics had been stolen outright, rather than merely exported illegally, he asked us whether the United States would return works that were improperly exported from a foreign country, even if they weren't technically stolen. Our answer: Typically not, assuming the foreign country does not have an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import restrictions. American courts will normally allow the current owner to keep art that has been wrongly exported from a foreign country (provided it is not stolen property and was properly declared when it was imported) on the theory that foreign-export restrictions are simply an exercise of a country's police power and do not create any ownership rights.

Kwon then asked us about suing for the return of his ceramics under international law in *(continued on page 00)*

Some facts have been altered for reasons of client confidentiality or, in some cases, created out of whole cloth. Nothing in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specific legal advice.

Brothers in Law

(continued from page 00) an international court. Unfortunately, there isn't, as yet, any law or forum with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decide questions of ownership of artworks. Kwon acknowledged that he wasn't only interested in regaining his family's personal treasures, but also those owned by his homeland: "If a foreign country says that it owns a work, will the United States enforce that foreign law and return it?"

"Possibly," we replied. The National Stolen Property Act (NSPA) criminalizes dealing in property valued at \$5,000 or more that has been "stolen, unlawfully converted or taken, knowing the same to be stolen."

In the 1977 case *U.S. v. McClain*, the federal government used the NSPA to convict individuals who sold pre-Columbian pieces in Texas after the a circuit court established that Mexico actually owned the works. The court determined that Mexico's legislation giving the country title to all of its antiquities was clear, so illegally exporting them from Mexico constituted theft. Similarly, in *U.S. v. Schultz*, which resulted in the 2003 conviction of the New York antiquities dealer Frederick Schultz for selling stolen artifacts, Schultz's defense team unsuccessfully argued that Egypt's patrimony law—which states that antiquities discovered in the country after 1983 are the property of the Egyptian government—was merely an export rule. The court rejected this argument, holding that "the NSPA applies to property that is stolen from a foreign government, where that government asserts actual ownership of the property pursuant to a valid patrimony law."

A handful of countries, including Italy and Egypt, have been very successful in compelling foreign governments to repatriate objects of cultural and historical significance. But South Korea's hope of reclaiming stolen art from Japan is more problematic in light of the 1965 Treaty on Basic Relations, which normalized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under which Korea—in a controversial move—renounced its claim to cultural property in exchange for economic assistance from Japan.

Moreover, identifying the rightful cultural heir isn't always easy.
○○ The UNESCO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dopted in 1972 (and accepted b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uggests that culture is everyone's common heritage. But the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adopted in 1995—neither the United States nor Japan is a member—seems to view cultural property as attached to a particular group. On top of that, the laws of various countries often conflict in regard to who owns which particular artifact.

In our own experience, a patient and methodical approach to repatriation, rather than a nationalistic and emotional one, has proven most effective. We generally suggest that clients take a careful inventory of exactly which works are missing, research the history of the pieces, investigate their legal status at home and abroad, and be creative during negotiations. This approach has already yielded some success for Korea—witness the return last June of royal archives that had been looted by the French during its invasion of Korea, in 1866. In the innovative solution reached in that case, France, rather than permanently returning the books (which a French court rejected), made a face-saving "permanent loan" of the works to Korea.

Kwon's final question concerned his private claim: "If a foreign country says that I don't own a ceramic and won't return it to me, may I sue that nation in a U.S. court to recover the piece, or for payment equal to its value?" The answer is: Maybe. In the 2010 case *Cassirer v. Kingdom of Spain*, a federal court ruled that the California resident Claude Cassirer could sue Spain for the return of the Camille Pissarro painting *Rue Saint-Honoré, Afternoon, Rain Effect*, 1897, which was taken from Cassirer's family by the Nazis in 1939 and later acquired by Spain. Sadly, however, Mr. Cassirer died a few weeks after the ruling, at the age of 89. The lesson? Patience and forbearance have their place in the tricky area of repatriation. But at some point, time runs out. ▣

THOMAS AND CHARLES DANZIGER ARE THE LEAD PARTNERS IN THE NEW YORK FIRM DANZIGER, DANZIGER & MURO, SPECIALIZING IN ART LAW.

문화 유산 반환의 새로운 개척지

한국의 약탈당한 문화재 되찾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토마스 댄지거, 찰스 댄지거

약탈당한 유럽 미술품 반환에 관한 미국에서의 법적 논쟁은 우리가 연재하고 있는 이 컬럼에 써 온 신소리의 수 만큼이나 혼한 일이다. 그러나 요령있다고 자부하는 미술품 수집가들이 파르테논 신전의 매입가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국을 포함해 약탈당한 아시아 미술품의 매입이 안고 있는 상당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는데, 가장 최근에는 1945년 광복에 이르기까지 일본으로부터 35년간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그 결과, 한국 문화재청의 엄밀한 계산에 따르면, 2011년 2월 현재 약 140,560점의 한국 문화재가 해외에 산재해 있는 가운데 37,972점은 미국에, 65,000점 이상은 일본에 흩어져 있다고 통계된다.

지난 여름 서울에서 열렸던 국제 문화재 반환 관련 컨퍼런스에서 만난 한국인 의뢰인 권씨는 영리한 사람으로 한국 문화재 반환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권씨는 컨퍼런스 이후 우리에게 스카이프 (Skype) 영상 통화를 통해 현재 뉴욕과 오사카에 흩어져 있는 그의 집안에 큰 의미가 있는 도자기의 반환을 도와달라고 요청해왔다.

우리는 권씨에게 긍정적 측면부터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미술품을 훔친 사람은 도난된 미술품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 일반법이 적용되었던 예로는 1989년의 미 연방 법원 관할 사건이었던 사이프러스 교회 대 골드버그 (Church of Cyprus v. Goldberg) 사건이 유명하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도난된 6세기 모자이크의 구매자였던 미국인 수집가 페그 골드버그 (Peg Goldberg)는 합법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에 정당한 소유권이 있는 교회에 반환할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미국법은 도난된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구매자가 도난 사실을 모른 채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입했다면 그 소유권이 인정되는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다른 대륙법 체계의 나라들의 법과는 대조된다.

그러나 설사 권씨의 도자기에 관한 소유권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된다 할 지라도, 해당되는 관할 주 법의 소멸 시효가 지난 뒤에 제기 될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을 수도 있다. 가령 뉴욕 주에서는 권씨와 같은 원소유권자가 소유권 반환을 ‘요청’하는 시점부터 소멸 시효가 발효되는 반면, 대부분의 다른 주에서는 원소유권자가 도난 사실을 ‘발견’한 시점이나 발견했어야만 하는 시점부터 발효된다.

미국 법원은 또한, 권씨가 자신의 도난당한 도자기를 되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해왔는지의 여부를 도난품 소유권 판단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 예를 들면, 2010년 미국에서 판결된 보스턴 미술관 대 세저-탐쉬츠 (Museum of Fine Arts, Boston v. Seger-Thomschitz) 사건에서는 오스카 코코슈카 (Oskar Kokoschka)의 1913년 작품인 ‘코코슈카와 알마의 누드 초상화’ (‘Two Nudes-Lovers’)의 소유권과 관련해, 원소유권자의 상속인이 뒤늦게, 초상화 양도에 관한 실제 지식을 갖고 있는 증인들이 모두 죽고 난 뒤에서야, 소송 제기를 한 데에 책임을 물어 박물관이 정당한 소유권을 갖는다고 판결내렸다.

권씨는 그의 도자기가 불법으로 수출된 것이 아니고 도난 된 것이라고 명백히 밝힐 수 없는 터라, 엄밀히 따지면 도난된 것은 아니나 불법으로 수출된 미술품일 경우에 미국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우리에게 물었다. 우리는 수출입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외국 국가일 경우, 불법으로 수출된 미술품을 돌려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미국 법원은 도난되지 않고 제대로 된 신고 절차를 밟은 후 현소유권자가 구입한 미술품일 경우에, 설사 그 미술품이 다른 나라에서 불법으로 수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있는데, 이는 수출 규제는 국가의 경찰권의 일부일 뿐, 규제권의 행사 자체로 국가가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을 결정할 수 없다는 미국 법원의 전제에 근거한다.

또한, 권씨는 국제법에 의거해 국제 재판소에서 그의 도자기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도 물어왔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미술품 소유에 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국제 관할권이 없는 상황이다. 권씨는 집안의 도자기를 찾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잃어버린 문화 유산을 되찾는 것 또한 그의 크나큰 관심사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만일 외국 국가가 내 도자기의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미국이 그 나라의 법을 집행해 되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답했다. 미국에서는 미화 오 천 불 이상의 가치가 있는 소유물의 도난, 개조, 혹은 획득에 관한 거래를 ‘장물 국가법’ (The National Stolen Property Act (NSPA)) 아래 불법화하고 있다.

1977 년 판결된 미국 대 맥클레인 (U.S. v. McClain) 사건에서, 미 연방 정부는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기 이전 시대의 미술품을 텍사스 주에서 팔아 넘긴 사람들의 유죄의 근거로 ‘장물 국가법’을 내세웠다. 이는 위 사건에서 팔아넘겨진 미술품의 사실상 소유권은 멕시코가 갖는다는 미 연방 고등법원의 판결 뒤의 일이었는데, 고등법원은 고대 유물에 관한 모든 소유권을 국가가 갖는다는 멕시코 제정법이 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멕시코 유물의 불법 수출을 절도로 명시했었다. 마찬가지로, 2003 년 미국 대 숄츠 (U.S. v. Schultz) 사건에서, 도난당한 유물의 매매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고대 유물 딜러였던 미국인 프레드릭 숄츠 (Frederick Schultz) 씨의 주장 – 이집트의 유산법 (“1983 년 이후에 발견된 고대 유물은 이집트 국가가 소유한다”) 은 단지 수출법에 지나지 않을 뿐, 이집트는 고대 유물에 대한 국가의 실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또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와같은 판결을 내렸다: “외국 정부가 그 나라의 유산법에 의거해 실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그 나라에서 도난된 미술품에 관한 소유권 논쟁 해결을 위해 ‘장물 국가법’이 적용된다.”

이태리나 이집트를 비롯한 몇 안 되는 나라만이 문화, 역사적 의미가 큰 문화재를 외국 정부로부터 반환 받는 데에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1965 년 한일협정에 의거해 한일 관계의 정상화와 더불어 문화재 반환권을 일본의 경제적 원조와 맞바꾼 한국으로서는 도난당한 문화재 반환을 요청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정당한 문화 유산 상속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일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1972 년 발효되고 미국과 일본에서 채택된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UNESCO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에서 ‘문화’는 ‘인류 모두의 공공의 유산’이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1995 년

발효되고 미국과 일본에서 채택되지 않은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 반환에 관한 유니드로 협약’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에서는 ‘문화 유산’을 ‘특정 집단의 소유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져, 각 나라마다 이러한 문화 유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르게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의 경험에 미루어 보았을 때, 국가적 또는 감정적 접근보다는 좀 더 끈기있고 체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문화 유산 반환에 보다 효과적일 듯 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뢰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미술품을 잃어버렸는지 묻고, 그것의 기원 및 출처에 관해 신중하게 재물 조사를 하도록 요청함과 동시에, 의뢰인 당사자의 국내 및 해외에서의 법적 신분을 확인한 뒤 협상시 반환 방법에 대해 창의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창의적 접근 방법의 좋은 본보기로 지난 6월 1866년 프랑스의 한국 침입당시 약탈당했던 외규장각의 반환 사례를 들 수 있다. 프랑스의 반대로 영구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대신 한국에게 ‘영구 대여’를 허락함으로써 프랑스는 면치레를 할 수 있었다.

권씨는 그의 도자기 반환 요청에 관한 마지막 질문을 했다: “만일 외국 국가가 도자기에 대한 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돌려주지 않으려 한다면, 도자기 반환이나 그 가치의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 미국 법원에서 그 나라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도 있나요?” 우리는 가능할 수 있다고 답했다. 2010년의 커시레 대 스페인 (Cassirer v. Kingdom of Spain) 사건에서 미 연방 법원은, 나치에게 1939년 약탈당한 후 스페인이 획득한 커시레 집안의 소유였던 까미유 피사로 (Camille Pissarro) 의 1897년 작품인 ‘젯빛 하늘에 흐르는 비’ (‘Rue Saint-Honoré, Afternoon, Rain Effect’) 의 소유권 주장을 캘리포니아 거주자였던 끌러드 커시레 (Claude Cassirer) 가 국가 스페인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송자였던 커시레 는 89세의 나이로 이 판결 이후 몇 주 뒤에 사망하고 말았다. 교훈이 있다면? 이렇듯 까다로운 문화 유산 반환 과정을 위해서는 인내심과 끈기가 필수인 반면, 소멸 시효가 지나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찰스 댄지거와 토마스 댄지거는 뉴욕 대표 아트 로펌인 댄지거 로펌의 대표 변호사이다.**
Danziger, Danziger & Muro, LLP
www.danziger.com
Email: charles@danziger.com

****위의 내용은 특정한 법적 자문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며, 본 기사는 아트 + 옥션 (Art + Auction) 매거진의 2012년 2월호에 실렸던 내용을 담고 있다.**
번역 서유미 (yumiseo@gmail.com)